
서울교대 대운동장 부지 개발을 위한
민간제안 수익형민자사업(BTO) 업무협약(MOU)

2025. 12.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BoMI
(주)보미건설 • (주)보미산업

서울교육대학교와 (주)보미건설 · (주)보미산업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(주)보미건설 및 (주)보미산업은 상호 신뢰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,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「대운동장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제안 수익형민간투자사업(BTO)」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내용) ①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대학의 산학혁신, 미래인재육성 및 지역사회 기여를 도모
2. 서울교육대학교 대운동장 및 정보교육관 부지 일원에 지하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확충 등의 개발

② 제1항의 부지 개발에 대한 세부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대상지는 교내 대운동장(약17,000㎡)과 정보교육관 및 분리수거장(약2,000㎡) 일대로 하며, 변동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2. 사업 추진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에 근거한 민간 제안 수익형민간투자사업(BTO) 방식으로 한다.

제3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4조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의(합의)한 대운동장 일원 부지 개발에 대한 건축기본계획(안) 수립 후 1년간 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7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접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.

제5조(권리의무) ①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,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.

② 서울교육대학교는 개발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사업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다.

③ (주)보미건설 및 (주)보미산업은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며, 민간부문사업제안서 접수시까지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투입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·해지)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

2.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

3. 대외적 여건상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③ 양 기관은 제2조제2항의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 또는 철회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이 서명·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12월 29일



서울교육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서울교육대학교

총장 장신호

(서명란)

장신호

BoMI

(주)보미건설

대표이사 김종배, 김학현

김종배 김학현

(주)보미산업

대표이사 김덕영

김덕영